인공지능과 저작권법 -인공지능 '창작'의 보호 문제-

<11 주차>

2022. 11. 11 (금)

단국대학교

김도경



목차

- I. 저작권 제도의 연혁
 - 1. 매체기술의 발달과 저작권의 보호
 - 2. 저작권의 주요내용
- п.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1. 인간 창작물과 구분되지 않는 인공지능 창작물
 - 2.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물인가?
- Ⅲ.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보호하여야 하는가
 - 1. 보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
 - 2.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견해
 - 3. 소결
- IV. 그밖에 인공지능 창작물을 둘러싼 문제들
 - 1.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별
 - 2. 인공지능 창작과정에서 인간 저작물의 이용



I. 저작권 제도의 연혁

1. 매체기술의 발달과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은 무체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부여를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저작권 제도의 역시 저작물을 담고 있는 매체기술의 발달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형성, 발달해 왔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유체재산법(민법)에 의해 지적인 창작품들이 간접적으로 보호되었다. 중세시대에는 하나의 저작물을 다량으로 제작하는 것이 극히 곤란했기 때문에 저작물(시, 소설, 조각, 그림)의 저작자는 유체물(책, 미술작품)의 소유자가 되어 그 유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 당시에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매체의 소유권과 별개로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였고,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도덕적 비단의 대상이 되었을 뿐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은 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인쇄술 발명 후, 책 제작비용이 감소하고 책이 대중에게 반포되었다. 인쇄 출판업자는 그 원본의 정리, 정정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지만 그 간행 후 얼마나 팔릴지는 전혀 불투명했고, 인쇄술이 제자리를 잡게 된 15세기 말경에는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통치자들과 성직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변혁을 꾀하는 사상의침투와 종교적 이단의 전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에 영국 왕실은 국왕대권(royal prerogaive)으로 허가 및 공적 검열 없이는 누구도 출판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즉, 런던의 인쇄업자와 서적판매상 단체인 출판업자조합 (the stationers' company)에게 출판독점의 특권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인쇄특권제도를 이용하여 인쇄업자들의 간행물을 통제, 검열하였다. 출판업자조합은 출판 관련 영업의 독점적으로 행사하였고 내부적으로 인쇄할 작품을 할당하는 출판업자의 저작권(stationer's copyright)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출판자를 위한 것이지, 저작자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출판특허제도는 17세기 존 로크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의 비판을 받아 1694년 폐지되었고, 개인주의사상에 기초한 근대적 법질서의 발전에 따라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자에게도 그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인 저작물에 관하여 일종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등장하게 되었다. 마침내 창작의 대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여왕법(Statute of Anne, 1710)이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1.1 페이지 제목 4 / 14

* 저작권자

개념: 저작권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제2조 22호). 따라서 실제로 작성하여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한 자가 저작자로 된다.

•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현상:

소유권은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유체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소유권과 무체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저작권은 구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 편지의 저작물성 여부('이휘소' 사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 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 경우 편지 자체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남아있게 된다.

2. 저작권의 주요내용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 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제2조제2항)로 시인, 소설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다. 저작권제도는 1차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copyright work)을 보호 하는 제도이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의 취지상 저작물은 아니지만 그와 인접한 객체를 보호하는 저작인접권 (copyright-related rights)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접권자로는 가수, 무용수, 성우 등 실연자(performer), 음반의 제작에 투자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음반제작자(phonogram producer), 방송을 공중에 전달하고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는 방송사업자(broadcasting organization) 등이 해당된다. 실연자 는 그 예술성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지만,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는 다분히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일종의 재산권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그 자신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로 저작인격권 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 는 권리로, 미공표 저작물에 관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의 창작자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인쇄,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인 복제권,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인 공연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 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인 공중송신권, 저작권자가 자신의 원 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공중에 직접 보여줄 권리인 전시권,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 저작권자가 자신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빌려줄 권리인 대여권, 저작권자가 자신의 원작품을 번역, 편 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내용으로 한다.

1.1 페이지 제목 6/14

* 저작물

1)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1) 저작물의 의의(§2 1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2 1호). 저작물의 정의 규정은 저작권법의 적용범위를 획정하고 저작물의 본질을 제시함으로서 해석상 의문을 줄이고 타 산업재산권법과 구별기준을 제시한다.

- (2)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 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저작자의 정신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학문적 또는 예술적, 철학적, 숭고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의 표현이 아닌 단순히 사실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저작물이 아니다. 자연현상으로 만들어진 것, 동물이 작성한 그림이나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작성한 음악은 저작물이 아니다.

** 저작재산권(7가지 권리 다발-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mark>공중송신권</mark>(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제22조))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제11조), 성명표시권 (제12조), 동일성유지권 (제13조)

1.1 페이지 제목 7 / 14

② 표현 –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 i) 표현이란
- 1. 인간의 내면의 아이디어를 외부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 2. 판례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상 저작권에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의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음, 색 등에 의 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mark>창작적인 표현 형식</mark>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ii) 외부 표현으로 충분하고 유형물에 고정할 필요는 없다 (예외 - 영상저작물 제2조 제13호-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 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